"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"

등록번호	청소행정과-30201
등록일자	2014.10.24.
결재일자	2014.10.27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자원재활용팀장	청소행정과장	복지문화국장	부구청장 직무대리	구청장
이상기	오관홍	강현섭	김창현	주윤중	10/27 신연희
협조자	의회법제팀장 박도규				

-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를 통한 구민 편익 증진 및 법령과 현실에 맞는 조례 운영을 위한 -

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계획

▢ 대상조례

○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

○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

▢ 개정내용

○ 상위법령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정, 용어의 정비 :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개정

○ 규제의 완화·제거 :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폐지 (상위 법령에 숙박업소 1회용품 규제대상 제외 및 별도의 포상금 규정 없음)

강 남 구

(청 소 행 정 과)

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
관련 규정 및 근거	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➢ 지방자치법,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
추진 경위	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 ➢ 불필요한 규제의 개선·완화를 통한 구민 편익의 증진 및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 개정된 상위법령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 및 폐지함
예산 사항	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➢ 해당사항 없음
수 혜 자 및 범위	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 ➢ 강남구민 전체
분 야 별 검토사항 〔계속 : 〕 〔신규 : 〕	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 ① 관련부서 협조 ---------- (○)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---------- (○)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---------- ( )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---------- ( ) ⑤ 시장조사 ---------- ( ) 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------ ( )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---------- (○)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---------- ( )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---------- ( ) ① 관련부서 협조 : 기획예산과, 감사담당관, 보육지원과 협조 ② 예상되는 민원 : 조례개정 및 폐지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예상민원 검토 ⑦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검토
타 기관 사 례	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 ➢ 타 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: 폐지 사례 있음
전 문 가 자 문	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 ➢ 해당사항 없음

-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를 통한 구민 편익 증진 및 법령과 현실에 맞는 조례 운영을 위한 -

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계획

불필요한 규제의 개선·완화를 통한 구민 편익의 증진 및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 개정된 상위법령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 및 폐지하고자 함

Ⅰ 대상 조례

▢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

▢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

Ⅱ 개정 및 폐지 사유

▢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

- 상위 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정비 및 조례에 별도 위임사항이 없는 과태료 부과·징수 등 별지 서식을 삭제

▢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
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이 “1회용 규제대상이던 숙박업을 규제대상에서 제외” 하는 내용으로 개정(대통령령 제21415호 2009.06.30 공포) 되었기에 당 조례를 폐지

Ⅲ 주요 개정내용

▢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

○ 내용 수정 : 근거 법령의 변경에 따른 조문 용어 수정

조항	수정 전	수정 후
제2조제2항제3호	“자원재활용 실행계획”	“자원순환 집행계획”
제3조제2항	“자원재활용 실행계획”	“자원순환 집행계획”
제6조제1항제2호	“법 제15조제1항”	“법 제12조의3”

○ 조항 삭제 : 별도의 위임규정이 없음에 따라 조항 전문 삭제

조항	수정 전	수정 후
제7조	“제7조제1항, 제2항, 제3항, 제4항”	<삭 제>
제9조	“제9조제1항, 제2항”	<삭 제>
제10조	“구청장은 과태료 부과·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수납부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”	<삭 제>
제11조	“이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·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.”	<삭 제>
제12조	“과태료는 부과·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,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.”	<삭 제>

○ 별지 삭제 : 위임규정이 없음에 따라 별지 1호에서 7호까지 전호 삭제

수정 전	수정 후
“[별지제1호서식] 과태료처분통지서”	<삭 제>
“[별지제2호서식] 과태료납부통지서”	<삭 제>
“[별지제3호서식] 과태료납부독촉장”	<삭 제>
“[별지제4호서식] 과태료부과취소(변경)통지서”	<삭 제>
“[별지제5호서식] 과태료처분에대한불복사유”	<삭 제>
“[별지제6호서식]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서”	<삭 제>
“[별지제7호서식] 과태료수납부”	<삭 제>

Ⅳ 폐지내용

▢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

○ 폐지사유
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이 “1회용 규제대상이던 숙박업을 규제대상에서 제외”하는 내용으로 개정(대통령령 제21415호 2009.06.30 공포)되었기에 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Ⅴ 추진 일정

일 정	추진 사항	비 고
2014.10.30(목)~11.19(수)	입법예고(20일)	구보 및 인터넷 게재
2014.10.30(목)	구의원 사전설명 및 전문의원 사전검토	
2014.10.30(목)~11.19(수)	부패영향평가	감사담당관
	성별영향평가	보육지원과
2014.11.20(목)	조례 확정 방침, 조례규칙심의회 상정	
2014.11.24(월)	조례규칙심의회 개최	예정
2014.11.25(화)	안건 상정(구의회)	

Ⅵ 행정 사항

- ▢ 입법예고 :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(공보실, 청소행정과)
- ▢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: 감사담당관, 보육지원과
- ▢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: 기획예산과

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1부

2.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(안) 1부